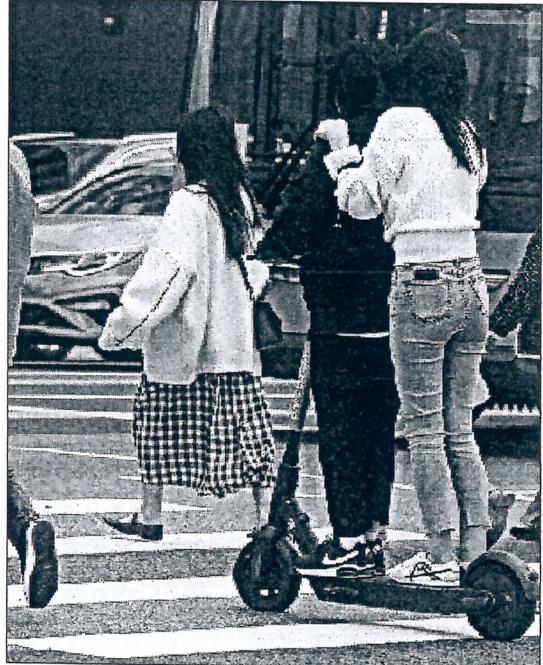


# 전동 킥보드 운행기준 강화

-개정도로 교통법 2021. 5.13. 시행

면허·헬멧 없이 킥보드 타면… 한달후엔 범칙금 12만원

새 전동킥보드법 5월 13일 시행, 이용자 대부분이 처벌 강화 몰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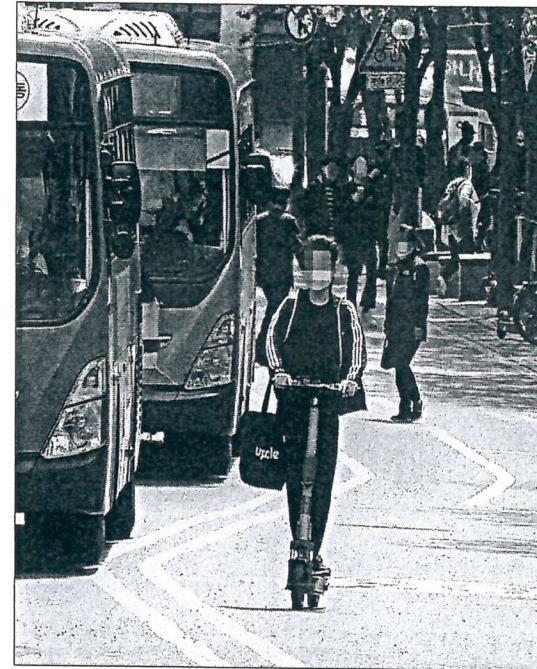
## 두명이 타면 안돼요

1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시민 두 명이 한 전동킥보드에 함께 올라탄 채 보행자들 사이를 지나고 있다. /장현성 기자



## 헬멧 꼭 써야 돼요

13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인도 위에서 한 시민이 헬멧 등 안전 장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잠시 멈춰 휴대폰을 보고 있다. / 박상훈 기자



## 역주행하면 큰일나요

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시민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하고 있다. /남강호 기자

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.

현재는 운전 면허가 없어도 킥보드 탑승이 가능하지만, 다음 달부터는 '원동기 이상 면허'가 필요하다.

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매긴다.

헬멧 미착용에는 범칙금 2만원,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다.

### 전동킥보드법, 한 달 뒤 어떻게 달라지나

현행 도로 교통법		개정 도로교통법 (5.13 시행)
무면허 운전 처벌	×	범칙금 10만원 (원동기 면허 이상만 가능)
2인 이상 탑승 처벌	×	범칙금 4만원
헬멧 미착용 처벌	×	범칙금 2만원
음주 운전	범칙금 3만원	범칙금 10만원

자료=경찰청

- 조선일보 2021-04-14-(수) A10면.